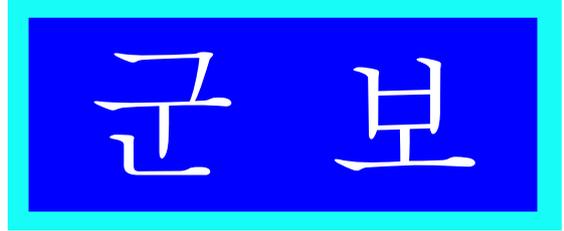




[www.jp.go.kr](http://www.jp.go.kr)

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709호 2022년 11월 28일(월)

조 례
-----

-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2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증평군 편집 : 문화체육과 (☎835-4134, 우27927,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)

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.

2022년 11월 28일  
증 평 군 수

증평군 조례 제1063호

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

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”로, “행사”를 “행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행할 수 있다”를 “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제113조부터 제116조의2까지”를 “제126조부터 제129조”로, “법 제120조”를 “법 제131조 및 제13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

호 본문 중 “법 제104조제2항”을 “법 제1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13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-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통보, 서류제출 요구,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사람의 출석·증언 또는 참고인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. 이 경우,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-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 요구를 위한 선서를 하게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6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별표 1과 같이 안내하고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.
-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제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법 제41조제4항”을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법 제42조제2항”을 “법 제5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#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(제9조제2항 관련)

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또는 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.

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별표 2]

과태료 부과기준(제9조제3항 관련)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 별	금 액
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	500
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	200
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	100
선서 또는 증언거부	50

[별지 제1호서식]

### 증인 출석 요구서

귀하

증평군의회가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「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「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일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- 1. 출석기간:
- 2. 출석장소:
- 3. 출석사유:
- 4. 그 밖의 사항:

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일

증 평 군 의 회 의 장 직인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참고인 출석 요구서

귀하

증평군의회가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「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「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일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출석기간:
- 2. 출석장소:
- 3. 출석사유:
- 4. 그 밖의 사항:

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일

증 평 군 의 회 의 장 직인

[별지 제3호서식]

수감 공무원 선서문

선 서

본인은 증평군의회(○○○○위원회)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(조사)를 받을 것이며, 또한,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「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기관 또는 부서명:

성 명:

(서명 또는 날인)

[별지 제4호서식]

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

선 서

본인은 증평군의회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와 관련하여 ○○○○위원회(본회의)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「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:  
생 년 월 일:  
성 명:

(서명 또는 날인)